

사 업 연 도	· · · ~ · · ·	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적용대상	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(중소기업, 비영리법인 등 제외)	일반[], 연결[]
	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	일반[], 연결[]
2. 과세방식 선택	③ 투자포함 방식(A방식)	[]
	④ 투자제외 방식(B방식)	[]

3.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

과 세 대 상 소 득	⑤ 사업연도 소득		
	가 산 항 목	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	
		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	
		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	
		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(A방식만 적용)	
		⑩ 소계(⑥+⑦+⑧+⑨)	
	차 감 항 목	⑪ 법인세액등	
		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	
		⑬ 법령상 의무적립금	
		⑭ 이월결손금 공제액	
		⑮ 피합병법인(분할법인)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	
		⑯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	
		⑰ 피합병법인(분할법인)의 양도차익	
⑱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			
⑲ 공적자금 상환액			
⑳ 소계(⑪+⑫+⑬+⑭+⑮+⑯+⑰+⑱)			
⑳ 기업소득(⑤+⑩-⑳)			
㉑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			
㉒ 과세대상 소득(㉑×70%또는15%, ㉑×㉑/㉑×70%또는15%)			
투 자 금 액	유 형 자 산	㉔ 기계 및 장치 등	
		㉕ 업무용 건물 건축비	
		㉖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	
	㉗ 무형자산		
㉘ 소계(㉔+㉕+㉖+㉗)			
임 금 증 가 금 액	상 시 근 로 자 임 금 증 가 금 액 계 산	㉙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	
		㉚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	
		㉛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	
		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	
		㉝ 해당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평균액	
	㉞ 임금증가 계산금액 $[(㉙-㉚) \leq 0 \text{ 인 경우} : (㉛-㉜), (㉙-㉚) > 0 \text{ 인 경우} : \{(㉛-㉜)-(㉙-㉚) \times ㉝\} \times 1.5 + (㉙-㉚) \times ㉝ \times 2]$		
	청 년 정 규 직 임 금 증 가 금 액 계 산	㉟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	
		㊱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	
		㊲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	
		㊳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	
㊴ 임금증가 계산금액[(㉟-㊱) > 0 인 경우만 (㊲-㊳)]			
㊵ 정규직 전환 근로자(청년정규직 근로자 제외) 임금증가금액			
㊶ 소계(㉞+㊴+㊵)			
상 생 협 력 지 출 금 액	㊷ 상생협력출연금		
	㊸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		
	㊹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		
	㊺ 상생협력 지출금액 계산[(㊷+㊸+㊹)×3]		

	직전 전 사업연도	직전 사업연도	해당 사업연도
50 미환류소득			
51 이월된 초과환류액			
52 차기 환류적립금			
53 이월된 차기 환류적립금			
54 초과환류액 (=49)			
55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(50-51-52+53-54)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3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